

●국토교통부령 제1128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06월 08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·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

가.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: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

나.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: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

2.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,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(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) 단축이 가능한 경우

제8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 본문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·종점이 모두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

가.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

나.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

제44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의5(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)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동차등록번호

2. 운송계약의 당사자

3. 계약일시

4. 탑승자 수

별표 1 제1호가목 중 “제8조제4항제1호”를 “제8조제5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8조제4항제4호”를 “제8조제5항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제8조제6항제1호”를 각각 “제8조제7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중 “제8조제6항제2호”를 각각 “제8조제7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중 “제8조제6항제3호”를 각각 “제8조제7항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(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을 말하며, 이 별표에서 같다) 안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.

별표 3 제3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

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·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·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·군 안의 점검·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별표 4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제2호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과. 여객의 안전한 승차·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.

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“3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5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의5, 별표 4,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정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5,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유상운송 허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상운송 또는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운행정보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일
------	--	------	--	------	----

신청인	상호	대표자(이름/생년월일)
	주소	전화번호
	법인등록번호	

신고내용	운행일시	운행목적 : []통근 []통학 []관광 기 타 ()
	운행경로	운수종사자(이름/버스운전자격증번호)
	자동차 등록번호	계약당사자(이용자대표 이름)
	계약일시	기타 필요사항
	탑승자 수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라 운행 기록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○○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

수수료

100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 및 결재	➔	수리	➔	발부
신청인		처리기관 (운수사업조합)		처리기관 (운수사업조합)		처리기관 (운수사업조합)		처리기관 (운수사업조합)

[별지 제23호의3서식]

[운행정보신고서 접수번호]			
운행기록증			
① 회사명		② 대표자 이름	
③ 운행일시	. . 부터 . . 까지		
④ 운행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근 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학 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⑤ 운행경로			
⑥ 운수종사자 이름 (버스운전자격증번호)			
⑦ 자동차등록번호			
⑧ 계약일시			
<p>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·도○○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</p>			

210mm×150mm[백상지(80g/m²)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운행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·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이용하여 광역급행형·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마을버스·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고 설치 가능지역을 주사무소 등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하는 한편,

여객자동차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키도록 의무화하고, 전세버스의 운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운행신고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